

○○ 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기간 : 2013. 3. 26 ~ 4. 2 (6일간)

□ 감사인원 : 9명

□ 지적사항 : 27건 (통보 19, 회수 4, 지급 3, 현지처분 1)

I.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업무전반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부정 및 오류를 시정 또는 예방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를 개선

2. 감사개요

- 감 사 기 간
 - 본 감 사 : 2013. 3. 26 ~ 4. 2 (6일간)
- 대 상 기 관 : ○○본부 8개지사
- 감 사 자 : 감사부장 외 8인
- 감 사 범 위 : 2012 종합감사 실시 이후부터 감사 실시일
전월 말일까지 업무전반

3. 중점점검사항

- 이번 감사는 지적측량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민원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특수업무 처리의 적정성, 측량(전산) 장비 관리의 적정성, 회계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업무 분야별 고위험 리스크 중점 관리, 경영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처리의 합법성·합리성을 검토하여 경영 목표에 부합되도록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모범사례 발굴에도 중점을 두었음.

II. 감사처분현황

감 사 실

지 급

제 목 지적측량업무(장기미결, 반환)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수료의 반환)에 따라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의뢰인의 개인사정으로 지적측량이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의뢰인이 서면¹⁾으로 연기를 요청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12.27. 개정된 같은 규정에는 의뢰인이 서면으로 측량연기를 요청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 일자가 도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적측량업무 처리 현황]

(금액단위: 원)

접 수 일	신청인	측량종목	접수번호	수수료 (VAT포함)	본인연기		비 고
					전화	서면	
2012. 1. 26.	○○○	분할측량	1(9)	1,707,200	18회	1회	장기미결 반환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지적측량업무를 총19회에 걸쳐 연기하면서 분할선 미협의 등의 사유로 의뢰인이 직접 제출한 서면 연기신청서(1회) 이외에는 유선(18회)으로만 연기요청을 받고 현재까지 지적측량 취소 및 반환조치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지적측량 업무처리를

1) 글씨를 쓴 지면,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환조치하시고, 관련 규정에 의거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3조(현지측량방법 등) 제8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에 따라 소관청으로부터 행정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후에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반환(성과제시불능)처리 현황]

소관청	접 수 일	종 목	접수 번호	소 재 지	측량팀장	의뢰인명	반환처리
○○	2012. 2.17.	경계복원	20	○○ ###-7	○○○	×××	성과제시불능
○○	2012. 2.22.	경계복원	32	○○○ ##-12	○○○	×××	성과제시불능
○○	2012. 5.31.	경계복원	95	○○○#○ ##	○○○	×××	성과제시불능
○○	2012. 5. 7.	경계복원	80	○○○ ###-5	○○○	×××	성과제시불능
○○	2012. 2.14.	경계복원	59	○○○ ###-1	○○○	×××	성과제시불능
○○	2012. 2.14.	경계복원	42	○○○ ###-2	○○○	×××	성과제시불능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지적소관청과 측량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지적측량 의뢰인에게만 구두로 설명하고, 그 내용을 출장복명서

만으로 업무를 마무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경계와 지상경계의 불부합현상이 지속되게 업무를 종결처리 하는 등 지적측량업무(등록사항 정정) 처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법률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및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용역을 공급 받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내역]

(금액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과목	거 래 처	적 요	지출액		공 제 부	비 고
				공급가액	VAT		
2012. 2.15.	(업)수선비	○○○○○○○	전기승압공사	704,000	70,400	매 입 공 제	사업자등록번호 미고지
2012. 9.10.	(업)수선비	○○○○○○○○(주)	측량장비 수리 (디지털카메라)	14,091	1,409	"	현금 지급
2012..9.11.	(업)수선비	"	"	24,546	2,454	"	"
계			3 건	742,637	74,263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측량장비 및 건물 수선비를 집행하면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사업자등록번호 미고지 및 대금을 현금 지급함으로써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등 부가가치세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지연 발급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업무규정」 제18조(업무의 완료)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측량자는 측량이 완료되면 수수료 금액을 산출·정산하고, 지적측량결과도 등 관련 서류에 날인한다. 이 경우 도면전자결재시스템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 날인 또는 서명으로 대체 한다. 또한 공부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의 경우 업무완료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일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지연 발급 현황]

접수일자	종 목	접수 번호	신청인	토지소재지	측량일	정산일	성과도 발급일	측량자
2013. 1. 1.	지적현황	1	xxx	○○○ ○○○ ###-20	2013. 1. 3.	2013. 1. 3.	2013. 1. 7.	○○○
2013. 2.15.	지적현황	5	xxx	○○○ ○○○ #-81	2013. 2.21.	2013. 2.21.	2013. 2.25.	○○○
2013. 2.18.	지적현황	7	xxx	○○○ ○○ ###	2013. 2.21.	2013. 2.21.	2013. 2.25.	○○○
2013. 2.18.	지적현황	10	xxx	○○○ ○○ ### 외 2	2013. 2.22.	2013. 2.25.	2013. 2.26.	○○○
2013. 2.20.	지적현황	11	xxx	○○○ ○○○ ###-7	2013. 2.21.	2013. 2.21.	2013. 2.25.	○○○
2013. 2.22.	지적현황	13	xxx	○○○ ○○○ ###-3	2013. 2.22.	2013. 2.22.	2013. 2.25.	○○○
2013. 3. 7.	지적현황	14	xxx	○○○ ○○○ ###-1	2013. 3.12.	2013. 3.12.	2013. 3.14.	○○○
2013. 3. 8.	지적현황	15	xxx	○○○ ○○○ #-4	2013. 3.14.	2013. 3.14.	2013. 3.19.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 ○○○ ###-20번지 외 7건에 대하여 측량일(정산일)보다 2 ~ 5일 지연하여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발급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시사항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4조(지적기준점측량성과의 확인) 제3항에 따라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측량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29조(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 등)의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하고, 측량결과도를 파일로 저장 관리하여야 합니다. 같은 규정 제27조 (측량기하적)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판점 및 측정점은 측량자는 직경 1.5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의 원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1변의 길이가 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이하의 삼각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판점 옆에 평판이동순서에 따라 不₁ , 不₂ ----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2조(지적측량 자료조사)에 따라 세부측량시에는 지적측량에 사용한 관련정보(측량목적, 특이사항, 측량자 의견, 사용 기준점 현황, 인접필지 측량내역 등)는 현장지원시스템(MOS)상의 자료부관리와 측량결과도상에 기록·관리하여 후속 업무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규정」 제19조(지적측량결과도)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적 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적측량결과도에는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 검사자의 날인을 하도록 되어있고, 지적측량결과도 작성자 및 면적측정자와 검사자를 다르게 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및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현황 (1)]

리 동	지번	종목번호	측량일	측량자	위규부당내용	비고
○○○	###-45	(일반)경계복원 43	2013. 2.25.	○○○	-측판이동순서 착오 -지적측량자료부 기준점연혁 미흡 및 자료조사 소홀	
○○	###	(특수)지적현황 3	2013. 1.10.	○○○	-측판이동순서 착오 -지적측량자료부 기준점연혁 미흡 및 자료조사 소홀	
○○○	###-8	(일반)경계복원 39	2013. 2.27.	○○○	-측판이동순서 착오	
○○○	###	(일반)경계복원 40	2013. 2.25.	○○○	-지적측량자료부 기준점연혁 미흡 및 자료조사 소홀 -가감지역 도근점 이동 제도 부적정	
○○○	###	(일반)지적현황 4	2013. 2. 7.	○○○	-지적측량자료부 기준점연혁 미흡 및 자료조사 소홀 -측판이동순서 (보1)착오 -가감지역 도근점 이동 제도 부적정	
○○○	###	(특수)지적현황 5	2013. 1.15.	○○○	-지적측량자료부 기준점연혁 미흡 및 자료조사 소홀 -면적측정자와 검사자 동일	
○○○	###	(일반)경계복원 19	2013. 1.29.	○○○	-지적측량자료부 기준점연혁 미흡 및 자료조사 소홀 -측판이동순서 누락	
○○	###	(일반)지적현황 13	2013. 3. 6.	○○○	-지적측량자료부 기준점연혁 미흡 및 자료조사 소홀 -가감지역 도근점 이동 제도 부적정	
○○	###-4	(일반)경계복원 33	2013. 2.20	○○○	-지적측량자료부 기준점연혁 미흡 및 자료조사 소홀 -측판이동순서 착오	
○○○	####-61	(일반)경계복원 2	2013. 1..3.	○○○	-측판이동순서 착오 -가감지역 도근점 이동 제도 부적정	

또한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기간 단축 및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실천 등 대국민서비스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경계복원 측량 성과도 현장교부제도 도입” (고객지원팀 - 979, 2009.04.20.) 및 “경계복원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업무처리요령 개선” (고객지원부 - 3481, 2012.09.27.)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는 현지출장 전 지적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 도면전자결재시스템상에서 지사장의 선결재를 받아 현장에서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시 상단에 “성과도 현장교부” 라고 표시하고 지사장에게 성과검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 및 결과도 작성 현황 (2)]

일련번호	측량일자	토지소재	종 목 (경계복원)	측량자	위규부당내용
1	2013. 2.19.	○○○ #####-14	제30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2	2013. 2.20.	○○ ###-4	제33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3	2013. 2.19.	○○ ###-1	제32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4	2013. 2.19.	○○○ #####-1	제34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5	2013. 2.25.	○○○ #####-24	제35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6	2013. 2.25.	○○○ ###-45	제38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7	2013. 2.25.	○○○ ###	제40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8	2013. 2.25.	○○○ #####-6	제41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9	2013. 2.25.	○○○ ##-41	제43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0	2013. 3. 7.	○○○ #####-12	제48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1	2013. 3. 7.	○○○ ###	제47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2	2013. 3.11.	○○○ #####-213	제49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3	2013. 3.19.	○○○ #####-4	제54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4	2013. 3.19.	○○○ #####-15	제55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5	2013. 3.19.	○○ ###-7	제57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6	2013. 3.20.	○○○ #####-25	제58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7	2013. 3.19.	○○ ###-4	제59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8	2013. 3.20.	○○○ #####-10	제60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그런데도 위 현황(1)과 같이 지적측량기준점성과에 대한 자료 조사 및 기준점 연혁 기재를 소홀히 하였고 지적측량결과도를 작성하면서 평판이동 순서를 잘못 기재하였으며, 지적현황측량 시 면적측정과 검사를 동일인이 하는 등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업무를 소홀히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위 현황(2)와 같이 2013년도 지적측량성과도를 현장 교부한 18건에 대하여 지적측량결과도 상단에 “성과도 현장교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업무도 소홀히 처리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업무처리규정」 및 「업무규정」 등 관련규정과 지시사항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가격으로 당해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9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내역]

(금액단위:원)

지출일자	예산과목	거래처	적 요	지출액		공제 여부	비 고
				공급가액	VAT		
2012.03.19	(업)소모품비	○○○○(주)○○○	쓰레기봉투 구입	39,727	3,973	공제	면세품
2012.11.06	(업)소모품비	○○○○○○지점	"	49,273	4,927	"	"
2012.12.17	(업)회 의 비	○○○○○	기관장 회의비	504,546	50,454	"	유사접대비
계			3 건	593,546	59,354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구입 시 면세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입부가세를 공제 받았으며, 또한 기관장 회의비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임에도 매입부가세를 공제받는 등 부가가치세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업무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2013년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수료 반환)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측량의뢰를 취소하거나 지적측량 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 할 수 없는 때에는 1호 부터 8호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발생 시 취소 건에 대하여 현장상황에 따른 반환이유, 반환율, 고객관련 등 모든 사항을 세밀히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득하거나 또는 출장 복명서를 작성하여 지사장에게 보고 후 수수료반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2012~2013년 반환업무 내부결재·복명서 미작성 내역]

(금액단위:원)

접수일자	종 목	종목 번호	소 재 지	반환금	반환율	복명서·내부결재 유 무
2013. 3.21.	경계복원	85	○○ ○○ ###-1	443,300	90%	없음
2013. 2.21.	경계복원	51	○○ ○○ 산###-30	292,600	90%	없음
2013. 1.23.	경계복원	23	○○ ○○ ###-2	423,600	90%	없음
2012.11.26.	지적현황	97	○○ ○○ 산###-6	360,800	100%	없음
2012. 9. 4.	경계복원	208	○○ ○○ ###	635,800	100%	없음
2012. 6. 4.	경계복원	234	○○ ○○ ###-5	501,600	90%	없음
2011.12.27.	분할측량	17	○○ ○○ 산###-5	1,362,900	90%	없음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2년부터 2013년 감사일 현재까지 반환 (100%. 90%) 건에 대하여 내부결재 및 출장 복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

를 추진함으로써 수수료반환 발생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7조(측량기하적)에 따라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시 평판점·측정점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 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 거리를 기재하여야 하며, 평판점과 기지점사이는 도상거리와 실측거리를 방향선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3조(현지측량방법 등)제7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경계복원점의 위치를 지적기준점·담장모서리 및 전신주 등 주위 고정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측량결과도 여백에 그 거리를 기재하거나 측정점의 위치설명도를 작성하며 주위 고정물이 없는 경우에는 경계점에서 평판점과 적정위치의 고정물까지 거리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3조(현지측량방법 등) 제14항에 따라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은 후속으로 실시되는 지적측량성과와의 부합여부를 확인 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측량결과도 작성시 경계점표지는 경계점표지의 종류, 번호 및 설치수량을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표시후미설치” 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현장지원시스템(MOS) 및 업무지원시스템(COS)에 규격별 사용 수량이 일치하도록 소모품 수불부 입·출고 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현황]

접수일자	종목 (번호)	토지소재지	완료일자	측량자	위규부당내역	비고
2013. 3.13.	분할측량 (63)	○○○ ○○○ ##-3	2013. 3.19.	○○○	-평판점·측정점 방위표정시 실측거리 미기재 -측정점위치설명도 작성 소홀(직·간접적으로	

					미측정)	
2013. 3.13.	경계복원 (91)	○○○ ○○○ ###	2013. 3.20.	○○○	-평판점·측정점 방위표정시 실측거리 미기재 -측정점위치설명도 작성 소홀(직·간접적으로 미측정)	
2013. 1. 1.	분할측량 (2)	○○○ ○○○ ###	2013. 1. 4.	○○○	-평판점·측정점 방위표정시 실측거리 미기재 -경계점표지 수불정리 부적정 ·측량결과도(MOS) : 비포장용 15개, ·COS : 비포장용 13개	
2013. 2.13.	경계복원 (40)	○○○ ○○○ ###-4	2013. 2.15.	○○○	-기존 도근점 검은색원, 이동도근점 파란색 원으로 미표시 -평판점·측정점 방위표정시 실측거리 미기재 -경계점표지 수불정리 부적정 ·측량결과도(MOS) : 비포장용 15개, ·COS : 비포장용 13개	
2013. 2.26.	분할측량 (46)	○○○ ○○○ ####	2013. 3. 8.	○○○	-평판점·측정점 방위표정시 실측거리 미기재 -자료측량자료부 기준점 연혁 기재 미흡	
2013. 2.27.	경계복원 (57)	○○○ ○○○ ###	2013. 2.28.	○○○	-평판점·측정점 방위표정시 실측거리 미기재 -기존 도근점은 검은색원, 이동도근점은 파란색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미작성	
2013.03.12.	분할측량 (61)	○○○ ###-1	2013. 3.18.	○○○	-평판점·측정점 방위표정시 실측거리 미기재 -자료측량자료부 기준점 연혁 기재 미흡	
2013. 3. 4.	경계복원 (58)	○○○ ○○○ ####	2013.03.19	○○○	-기존자료 사용시 측량성과 부합여부 미확인 -경계점표지 수불정리 부적정 ·측량결과도(MOS) : 비포장용 27개 미설치 8개 ·COS : 비포장용 35개	
2013. 3.14.	분할측량 (64)	○○○ ○○○ ####-1	2013. 3.20.	○○○	-평판점·측정점 방위표정시 실측거리 미기재	
2013. 3. 6.	경계복원 (74)	○○○ ○○○ ####-2	2013. 3.13.	○○○	-기존 도근점은 검은색원, 이동도근점은 파란색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작성소홀 -지적측량자료부 기준점 연혁 기재 미흡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3.1.부터 현재까지 완료된 지적측량결과도를 표본 검사한 결과 평판점·측정점 방위표정시 실측거리 미기재, 기존 측량성과 부합여부 미확인, 측량결과도와 COS상 경계점표지 규격별 사용수량 상이, 지적측량자료부 기재 미흡 등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시사항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
측량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등록전환)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업무규정시행규칙」 제16조(측량자의 전산정리)에 따라 지적측량자가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에 따라 의뢰사항과 필지수, 면적 등 증감 내용을 대조하여 완료내역을 업무처리 전산 파일에 정산처리하고 측량자명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업무처리 전산화일 정리 확인) 제1항에 의하여 완료된 지적측량결과도, 측량부, 면적측정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지사장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전환 될 면적이 임야대장의 면적과 완료된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최종 결정된 면적에 의하여 지적측량수수료의 반환 또는 추가 수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012년. 2013년 감사일 까지 등록전환 업무처리 현황]

(면적단위 : m²)

접수일자	접수번호	토 지 소 재 지	접수면적	정산면적	공부상 면 적
2012. 2.16.	7	○○○ ○○○ (산##-0)	8,378	8,378	8,371
2012. 2.24.	8	○○○ ○○○ (산###-1)	650	650	650
2012. 2.29.	12	○○○ ○○○ (산#-2)	100	100	87
2013. 2. 7.	1	○○○ ○○○ (산#)	156	156	148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등록전환 업무의 완료 건에 대하여 임야대장상의 면적과 완료면적을 동일하게 전산 정리하는 등 지적측량(등록전환)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적업무 처리규정」 등 관련 법규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등록전환)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업무 처리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의 과다한 발생은 공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민원인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접수자는 고객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지적측량업무를 접수하고 지사장은 반환의 발생원인과 유형을 세밀히 분석하여 해소대책 강구 및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반환이 감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고객의 원에 의한 지적측량 취소건은 「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9호에 따라 지적측량 취소신청서를 작성 후 날인하여 관계철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011~2012년 반환내역 (1)]

(단위 :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2년(본부)	비 고
완료(A)	2,176	1,277	28,102	
반환(B)	176	142	2,414	2012년 본부 대비 증 2.5 %
비율(A/B)	8.0 %	11.1 %	8.6 %	

[2012 ~2013년 감사일 까지 취소원 미작성 분 (2)]

(금액단위 : 원)

접수일	토지소재지	접수금액	반환금액	반환율	취소원 유무	기 타
12. 4. 19.	○○ ○○ ###-2	347,600	287,600	70%	무	본인취소
12. 9. 3.	○○ ○○ ##-5	295,900	295,900	100%	무	“

12.11. 2.	○○ ○○ ###	333,300	299,200	90%	무	“
12.11. 5.	○○ ○○ #####-8	455,400	387,200	70%	무	“
13. 1.30.	○○ ○○ 산###	382,800	338,800	90%	무	“

그런데도 위 현황(1)과 같이 연도별 반환 건수가 계속적으로 본부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직원교육 실적이 미흡하고, 위 현황(2)와 같이 고객이 직접 작성한 지적측량 취소신청서가 누락되는 등 반환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업무규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환업무 처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9조(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 등)에 따라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와 같이 작성하고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2조(지적측량자료조사)에 의하여 세부측량 시에는 지적측량에 사용한 관련정보(측량목적, 특이사항, 측량자의견, 사용 기준점현황, 인접필지 측량내역 등)는 현장지원시스템(MOS)상의 자료부와 측량결과도상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준점 사용연혁 등은 향후 인근 필지 업무수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현황 (1)]

접수일자	종목 (번호)	토지소재지	완료일자	측량자	위규부당내역	비고
2013. 3. 7.	분할 (116)	○○○ ○○○ ###	2012.03.20	○○○	-도근점 번호 누락 -경계점표지 수불정리 부적정 . 측량결과도(MOS) : 비포장용 1개, 미설치 1개 . COS : 비포장용 2개	
2013. 3. 5.	경계 (130)	○○○ ○○○ ###	2013.03.07	○○○	-기존 도근점 검은색원, 이동도근점 파란 색 원으로 미표시 - 기존자료 사용시 측량성과 부합여부 미 확인 - 측정점위치설명도 작성 소홀(직.간접적 으로 미측정) - 자료측량자료부 기준점 연혁 기재 미흡	
2013. 2.25.	분할 (99)	○○○ ○○○ ###-1	2013.03.06	○○○	-기존자료 사용시 측량성과 부합여부 미 확인 - 자료측량자료부 기준점 연혁 기재 미흡	
2013. 2.28.	경계 (122)	○○○ ○○○ ###	2013.03.06	○○○	-기존 도근점 검은색원, 이동도근점 파란 색 원으로 미표시 -기존자료 사용시 측량성과 부합여부 미	

					확인 -경계점표지 수불정리 부적정 . 측량결과도(MOS) : 비포장용 10개, . COS : 비포장용 12개
2013. 3. 7.	분할 (115)	○○○ ○○○ ###-1	2013.03.19	○○○	-기존 도근점 검은색원, 이동도근점 파란 색 원으로 미표시 -평판점·측정점 방위표정시 실측거리 미 기재 - 자료측량자료부 기준점 연혁 기재 미흡
2013. 2.28.	경계 (122)	○○○ ○○○ ###	2013.03.06	○○○	-평판점은 직경 1.5~3mm이하 원으로 작 성하여야하며 평판점은 이동순서에 따라 不 ₁ , 不 ₂ ..표시해야하나 누락 -평판점간 방위표정시 방위각/표정거리 불 은색으로 기재 누락

또한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실시” (고객지원팀-1011, 2009.04.22.) 및 “지적측량 현장교부제 업무처리 요령 개선 알림” (고객지원부-3481, 2012.09.27.)에 따라 지적측량결과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장 전 측량준비도를 작성하여 현장지원시스템상에서 선결재 성과검사를 받아 현장에서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도를 교부하고, 측량결과도 작성시 상단에 “성과도 현장교부” 라고 표시하고 성과검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지적측량결과도 현장교부 처리현황 (2)]

2012.1.1.~2013.3.현재

년도	업무종목	완료건수 (A)	교부방법 (현장교부) (B)	결과도 기재여부 (C)	비 율		비 고
					A:B	A:C	
2012	일반업무 경계복원	680	109	0	16.0	0	
2013	“	191	125	0	65.4	0	

그런데도 위 현황(1)과 같이 2013.1월부터 현재까지 완료된 지적측량 결과도를 표본검사한 결과, 평판점간 이동순서 누락, 도근점 번호 누락, 기존 측량성과 부합여부 미확인, 경계점표지 수불정리 상이등 지적측량결과도 작성업무가 미흡하게 처리하였으며, 현황(2)와 같이 2012.1.1.부터 2013.3

현재까지 성과도 현장 교부한 234건에 대하여 지적측량결과도 상단에 “성과도 현장교부” 날인을 하지 않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업무처리규정」 및 「업무규정」 등 관련규정과 지시사항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회 수

제 목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표준세율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500,000원,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350,000원, ~ 중략 ~, 기타법인은 50,000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용한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 법인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없고 자산총액이 407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으로 지방세법 제 17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타법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법인 세액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2년도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 내역]

(금액단위:원)

과세연도	과세기관	기지금액	요지금액	차액 (환급받을 금액)	비 고
2012년	○○○○	220,000	55,000	165,000	이자 미포함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2년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165,000원 (이자 미포함)을 과세 관청에 환급 신청하여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세 납부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지급, 회수

제 목 휴대폰사용료 보조금 지급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휴대폰사용료 보조금은 지사장 및 지사 측량업무 담당직원(현장보조 인력 포함)을 대상으로 매월 50,000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로 통신업체에서 매월 발급하는 사용료 청구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사용료 보조금 지출내역]

(단위 : 원/명)

구 분	추가지급		회수		청구서미제출		비 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지급액	
2월 지급액	7	102,640			3	90,000	1월 정산분
3월 지급액	9	153,710	1	30,000	1	30,000	2월 정산분 회수(장기병가)
5월 지급액					2	89,060	
7월 지급액					5	238,340	
8월 지급액					7	343,870	
9월 지급액					5	250,000	
10월 지급액			1	5,220	6	300,000	소액결제 제외
11월 지급액					6	300,000	
12월 지급액	1	3,300			7	350,000	착오지급
합 계	16	259,650	2	35,220	42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휴대폰보조금을 청구에 따른 2월~3월 지급 내역(1월, 2월 사용분)에 대하여 보조금 한도액인 3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휴대폰사용료 보조금 지급요령 개정” (사업지원실-1745, 2012.4.23.)에 따라 기사용분에 대하여 정산 지급하지 않았으며 기타 월 지급액중 소액결제 및

2012년 청구서 미 제출자에게 휴대폰사용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과다·과소하게 지급된 직원 휴대폰보조금을 추가지급(259,650원) 및 회수(35,220원) 조치하고, 청구서 미제출자 42명에 대하여 청구서를 징구하여 첨부하고,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요령” 등 관련규정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등록전환)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등록전환 될 면적이 임야대장의 면적과 완료된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최종 결정된 면적에 의하여 지적측량수수료의 반환 추가 수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업무규정」 제25조(등록전환 측량)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측량 결과에 따라야 하며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등록전환 업무처리 현황]

(면적단위 : m²)

접수일자	접수번호	토지소재지	접수면적	정산면적	공부상면적
2012. 1. 1.	1	○○○ ○○○ (산##-1)	3,620	3,620	3,620
2012. 1. 1.	12	○○○ ○○○ (산##-1)	5,632	5,632	5,632
2012. 1. 1.	15	○○○ ○○○ (산##-1)	34,909	34,909	34,909
2012. 7. 5.	38	○○○ ○○○ (산##-14)	659	659	659
2012. 1. 1.	4	○○○ ○○○ (산#-0)	1,634	1,634	1,634
2012. 1. 1.	5	○○○ ○○○ (산#-0)	366	366	366
2012.11. 2.	58	○○○ ○○○ (산##-3)	137	137	137
2012. 1. 1.	6	○○○ ○○○ (산##-1)	3,810	3,810	3,810
2012. 1. 1.	7	○○○ ○○○ (산##-0)	3,707	3,707	3,707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접수 당시의 임야대장 공부상 면적과 정산면적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등 업무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업무가 소홀히 처리 되었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적업무 처리규정」 등 관련 법규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등록전환)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업무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의 과도한 발생은 공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민원인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접수자는 고객과의 충분한 현장상황 경청과 업무수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 지적측량업무를 접수하여야 하며, 지사장은 반환의 발생원인과 유형을 세밀히 분석하여 해소대책 강구 및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반환이 감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11~2012년 반환내역]

(단위 :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2년(본부)	비고
완료(A)	1,115	1,018	28,102	
반환(B)	166	166	2,414	2012년 본부
비율(A/B)	14.9 %	16.3 %	8.6 %	대비 증 7.7%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2년 업무처리 중 반환 건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본부 평균 2배 정도의 반환률이 발생하였음에도 직원교육이 미흡하고, 반환 증가에 따른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는 등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업무규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

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환업무 처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7조(측량기하적)에 따라 평판점·측정점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 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 거리를 기재하여야 하며, 평판점 및 측정점은 측량자는 직경 1.5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의 원으로 표시하고 평판점 옆에 평판이동순서에 따라 不₁, 不₂, --으로 표시하며, 평판점과 기지점사이는 도상거리와 실측거리를 방향선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3조(현지측량방법 등)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경계복원점의 위치를 지적기준점·담장 모서리 및 전신주 등 주위 고정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측량결과도 여백에 그 거리를 기재하거나 측정점의 위치설명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위 고정물이 없는 경우에는 경계점에서 평판점과 적정위치의 고정물까지 거리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2조(지적측량자료조사)에 따라 세부측량시에는 지적측량에 사용한 관련정보(측량목적, 특이사항, 측량자 의견, 사용 기준점 현황, 인접필지 측량내역 등)는 현장지원시스템(MOS)상의 자료부와 측량결과도상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준점 사용연혁 등은 향후 인근 필지 업무수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현황]

접수일자	종목 (번호)	토지소재지	완료일자	측량자	위규부당내역	비고
2013. 3. 1.	분할측량 (64)	○○○ ○○○ ###-4	2012. 3. 19.	○○○	-평판점·측정점 방위표정시 실측거리 미기재 -기존자료 사용시 측량성과 부합여부 미확인	

2013. 3. 7.	경계복원 (108)	○○○ ○○○ ###	2013. 3.13.	○○○	-기존자료 사용시 측량성과 부합여부 미확인 -측정점위치 설명도 작성 미흡 -지적측량자료부 작성시 기준점 연혁 기재 미흡 및 자료조사 기재 누락
2013. 2.28.	분할측량 (58)	○○○ ○○○ ####-2	2013. 3.13.	○○○	-기존 자료 사용시 측량성과 부합여부 미확인 -자료측량자료부 기준점 연혁 기재 미흡
2013. 3. 6.	지적현황 (27)	○○○ ○○○ ###	2013. 3.19.	○○○	-평판점은 직경 1.5~3mm이하 원으로 작성 하여야하며 평판점은 이동순서에 따라 不 1, 不2 ..표시해야하나 누락 -기존자료 사용시 측량성과 부합여부 미확인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3. 1.부터 현재까지 완료된 지적측량결과도를 표본검사한 결과, 평판점·측정점 방위표정시 실측거리 미기재, 기존 측량성과 부합여부 미확인, 자료조사부 및 기준점 연혁기재 미흡 등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업무처리규정」 및 「업무규정」 등 관련규정과 지시사항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특수업무)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업무규정」 제3조(업무의 구분)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지적측량업무를 의뢰 받은 경우 측량일자, 업무처리기간, 공정별 추진계획 등을 의뢰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신청 업무 중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3항에 따라 측량기간 내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협의하여 「업무규정」 제15조(업무의 처리)제1항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 계획서에 의거 업무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서 미추진 현황]

접수일	총계정	종목	접수 번호	계 약 명	처리 기간
2012. 7.23.	132	지적현황	36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90
2012. 4.13.	57	분할측량	67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편입토지 분할측량	155
2012. 3.21.	43	분할측량	46	2011가단 13290 소유권이전등기 법원감정측량의뢰	55
2012. 7.24.	134	분할측량	169	득량지구(득량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의뢰	42
2012. 4.23.	67	분할측량	80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분할측량의뢰	40
2012. 4.23.	67	분할측량	79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분할측량의뢰	40
2012. 4.23.	67	분할측량	78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분할측량의뢰	40
2012. 4.23.	67	분할측량	77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분할측량의뢰	40
2012. 4.23.	67	분할측량	75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분할측량의뢰	40
2012. 4.23.	67	분할측량	76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분할측량의뢰	39
2012. 7.24.	134	분할측량	171	득량지구(득량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의뢰	37

2012. 7.24.	134	분할측량	170	득량지구(득량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의뢰	37
2012. 6.20.	110	분할측량	145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편입토지 분할측량의뢰	37
2012. 4.18.	62	분할측량	71	판소리테마파크 조성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분할측량의뢰	34
2012. 2.22.	24	지적현황	3	2011가단 75169 손해배상 법원감정측량(현황)	33
2012. 2.24.	29	분할측량	35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분할측량의뢰	31
2012. 7. 6.	97	경계복원	20	국유재산 분할측량의뢰	25
2012. 5. 9.	82	분할측량	97	2012 읍어 서상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분할측량의뢰	25
2012. 5. 9.	82	분할측량	96	2012 읍어 서상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분할측량의뢰	25
2012. 5. 9.	82	분할측량	95	2012 읍어 서상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분할측량의뢰	25
2012. 5. 9.	82	분할측량	94	2012 읍어 서상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분할측량의뢰	25
2012. 5. 9.	82	분할측량	93	2012 읍어 서상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분할측량의뢰	25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2년도 특수업무(지적측량)를 집행하면서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정별 추진계획 및 일정협의 등을 문서화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업무처리규정」 및 「업무규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특수업무)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등록전환측량 준비도 작성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7조(측량준비파일의 작성)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 인근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을 할 때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지적도에 전개한 경계선. 다만,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좌표에 따라 확대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전환측량 준비도 작성 현황]

년도별	종 목	건수	내 용	비고
2012년	등록전환	29건	임야도 경계점좌표 독취 및 지적도 전개 누락	
2013년	등록전환	4건	임야도 경계점좌표 독취 및 지적도 전개 누락	
계		33건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총33건(2012년 29건, 2013년 4건)의 등록전환측량 업무를 처리하면서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독취하지 않았고 또한 지적도에 독취한 경계점의 좌표를 전개하지 않는 등 등록전환측량 준비도 작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측량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결과도 (등록전환) 작성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2조(지적측량자료조사) 제3항 제4호에 따라 지적기준점성과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에 따라 지적측량결과도 여백의 지적측량자료부에 기준점 설치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후속 업무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46조(지적기준점 등의 제도)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성기준점은 직경 2밀리미터 및 3밀리미터의 2중원 안에 십자선을 표시하여 제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규정」 제19조(지적측량결과도)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적측량결과도에는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 검사자의 날인을 하도록 되어있고, 지적측량결과도 작성자 및 면적측정자와 검사자를 다르게 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및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현황 (1)]

리 동	지 번	종목번호	측량일	측량자	위규부당내용	비고
○○○ ○○○	####-39	지적현황 제25호	2013.3.12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자료조사 소홀	
○○○ ○○○	산###	지적현황 제19호	2013.2.22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자료조사 소홀 면적측정자검사자 동일	
○○○ ○○○	###-11	지적현황 제17호	2013.2.21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자료조사 소홀 면적측정자 검사자 동일	
○○○ ○○○	산##	지적현황 제 1 호	2013.1.9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자료조사 소홀 면적측정 검사자 누락 위성기준점 제도 부적정	
○○○ ○○○	산##-1	지적현황 제5호	2013.1.23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자료조사 소홀 위성기준점 제도 부적정	
○○○	###-25	지적현황	2013.2.26	○○○	지적측량자료조사(기준점)착오 기재	

○○○		제20호			면적측정부(검사자 누락)
○○○ ○○	###-2	지적현황 제23호	2013.3.6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자료조사 소홀
○○○ ○○○	###	경계복원 제72호	2013.3.11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자료 조사 소홀
○○○ ○○○	###	경계복원 제68호	2013.3.7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자료조사 소홀
○○○ ○○○	###-3	경계복원 제63호	2013.3.6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자료조사 소홀 측판점 이동순서 착오
○○○ ○○○	산##	경계복원 제82호	2013.3.18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자료조사 소홀

또한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기간 단축 및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실천 등 대국민서비스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시한 “경계복원 측량 성과도 현장교부제 도입” (고객지원팀 - 979, 2009.04.20.) 및 “경계복원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업무처리요령 개선” (고객지원부 - 3481, 2012.09.27.)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는 현지출장 전 지적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 도면전자결재 시스템상에서 지사장의 선 결재를 받아 현장에서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시 상단에 “성과도 현장교부” 라고 표시하고 지사장에게 성과검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 및 결과도 작성 현황 (2)]

경계복원 접수		토지소재	종목	측량자	내 용
번호	측량일자				
1	2013. 2.21.	○○○ ○○○ ###	경계복원 제43호	○○○	선결재 및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2	2013. 2.22.	○○○ ○○○ ###-2	경계복원 제47호	○○○	선결재 및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3	2013. 3.5.	○○○ ○○○ 산##-8	경계복원 제58호	○○○	선결재 및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4	2013. 2.21.	○○○ ○○○ ###-2	경계복원 제44호	○○○	선결재 및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5	2013. 3. 7.	○○○ ○○○ ###	경계복원 제68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6	2013. 3. 7.	○○○ ○○○ ###-5	경계복원 제70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7	2013. 3.11.	○○○ ○○○ ###	경계복원 제72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완료일자와 교부일자 상이
8	2013. 3.12.	○○○ ○○○ #####-39	경계복원 제73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9	2013.3.12.	○○○ ○○○ ###-1	경계복원 제75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0	2013. 3.12.	○○○ ○○ ###-1	경계복원제 76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1	2013. 3.14.	○○○ ○○○ ###	경계복원 제78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2	2013. 3.13.	○○○ ○○○ ###-4	경계복원 제79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3	2013. 3.13.	○○○ ○○○ ###-2	경계복원제 81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4	2013. 3.18.	○○○ ○○○ 산##	경계복원제 82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5	2013. 3.14.	○○○ ○○○ #-1	경계복원8 3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6	2013. 3.15.	○○○ ○○○ #####-2	경계복원 제84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7	2013. 3.18.	○○○ ○○○ ###	경계복원 제85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8	2013. 3.18.	○○○ ○○○ ###-1	경계복원 제86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19	2013. 3.15.	○○○ ○○○ ###-1	경계복원제 87호	○○○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

그런데도 위 현황(1)과 같이 지적측량결과도를 작성하면서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에 대한 자료조사 미흡, 위성기준점 제도 부적정 및 면적측정자와 검사자 동일 등 지적측량결과도 작성을 소홀하게 처리하였고, 위 현황(2)와 같이 2013년도 지적측량성과도를 현장 교부한 19건에 대하여 지적측량결과도 상단에 “성과도 현장교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업무처리규정」 및 「업무규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회 수

제 목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표준세율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500,000원,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350,000원, ~ 중략 ~, 기타법인은 50,000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용한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 법인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없고 자산총액이 407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으로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타법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법인 세액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년도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 내역]

(금액단위:원)

과세연도	과세기관	기지금액	요지금액	차액 (환급받을 금액)	비 고
2010년	○○○○	220,000	55,000	165,000	이자 미포함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0년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165,000원 (이자 미포함)을 과세 관청에 환급 신청하여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세 납부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실시” (고객지원팀-1011, 2009.04.22.)와 “지적측량 현장교부제 업무처리 요령 개선 알림” (고객지원부-3481, 2012.09. 27.)에 따라 지적측량결과도 상단에 “성과도 현장교부” 를 기재 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중 「측량성과도 바로처리향상률」 지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작성현황]

접수번호	접수일자	측량일자	대표소재지	측량자	위규부당내용
337	2012. 9.20.	2012.10. 8.	○○○ ○○○ (###)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349	2012.10. 5.	2012.10. 9.	○○○ ○○○ (###-27)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351	2012.10. 5.	2012.10.10.	○○○ ○○○ (###)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355	2012.10..8.	2012.10.11.	○○○ ○○○ (###-3)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357	2012.10.10	2012.10.12.	○○○ ○○○ (###-10)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360	2012.10.10.	2012.10.15.	○○○ ○○○ (###-1)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368	2012.10.15.	2012.10.16.	○○○ ○○○ (###-1)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373	2012.10.17.	2012.10.19.	○○○ ○○○ (###-2)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375	2012.10.17.	2012.10.26.	○○○ ○○○ (###-18)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381	2012.10.22.	2012.10.25.	○○○ ○○○ (###)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382	2012.10.24.	2012.10.31.	○○○ ○○○ (###-1)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385	2012.10.25.	2012.10.29.	○○○ ○○○ (###-2)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386	2012.10.26.	2012.11.16.	○○○ ○○○ (###)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392	2012.10.31.	2012.11.02.	○○○ ○○○ (###-8)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395	2012.11. 2.	2012.11. 7.	○○○ ○○○ (###-11)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397	2012.11. 2.	2012.11. 5.	○○○ ○○○ (##-1)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407	2012.11.13.	2012.11.27.	○○○ ○○○ (###)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416	2012.11.19.	2012.11.22.	○○○ ○○○ (###-4)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422	2012.11.22.	2012.11.27.	○○○ ○○○ (###-2)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433	2012.11.26.	2012.11.28.	○○○ ○○○ (###-10)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2	2013. 1. 1.	2013. 1. 4.	○○○ ○○○ (###-1)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11	2013. 1. 4.	2013. 1.10.	○○○ ○○○ (산###-9)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12	2013. 1. 4.	2013. 1.14.	○○○ ○○○ 산##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14	2013. 1. 7.	2013. 1.11.	○○○ ○○○ 산##-5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15	2013. 1. 9.	2013. 1.17.	○○○ ○○○ ##-1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16	2013. 1. 9.	2013. 1.15.	○○○ ○○○ ###-1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18	2013. 1. 6.	2013. 1.18.	○○○ ○○○ 산##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58	2013. 2.18.	2013. 2.25.	○○○ ○○○ 산##-1	○○○	성과도현장교부기재사항누락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현장에서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발급하고도 지적측량결과도에는 발급사실(성과도 현장교부)기재를 누락하는 등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업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과 지시사항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회 수

제 목 지출업무(소모품비)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업무에 활용할 전산용품(소모품)에 대하여 수요발생 시 일선에서 즉시 구입 가능하게 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정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 C352 흑색토너 외 54종”에 대하여 전산용품(소모품)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현황(1)과 같이 각 기관에 통지 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부 작성 현황(1)]

- 2012년도 전산용품(소모품) 단가계약 체결 알림(정보운영부-334, 2012.02.13)
- ○○○○○○ C352 흑색토너 외 54종
- 계약업체 : (주)○○○○○○○

[2012년도 소모품(전산용품) 구입내역(2)]

(단위 : 개/원)

품위요구	품명	수량	단가		지출금액		차액
			구입단가	계약단가	기지금액	요지금액	
2012.2.27.	C352C	2	86,000	75,250	172,000	150,500	21,000
	C352K	2	73,000	63,875	146,000	127,750	18,250
	C352M	2	86,000	75,250	172,000	150,500	21,000
	C352Y	2	86,000	75,250	172,000	150,500	21,000
합 계		8			662,000	579,250	81,250

그런데도 현황(2)와 같이 C352 토너 8개를 구입하면서 2012년도 전산용품(소모품) 계약단가가 아닌 업체에서 제시한 단가로 소모품을 구매하여 81,250원을 초과 지출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과다 지출된 소모품비에 대하여 회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지급, 회수

제 목 지적측량(등록전환)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1항에 따라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같은 규정 가목의 계산식²⁾에 따른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 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규정시행규칙」 제16조(측량자의 전산정리) 측량자가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에 따라 의뢰 사항과 필지수, 면적 등 증감 내용을 대조하여 완료내역을 업무처리 전산파일(COS)에 정산처리하고 측량자명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며, 등록 전환될 면적이 임야대장상의 면적과 완료된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최종 결정된 면적에 의하여 지적측량수수료의 반환 및 추가 수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012년도 지적측량(등록전환) 업무처리 현황]

(금액단위:원)

순번	접수번호	소재지	접수면적	정산면적	결정면적	정산금액(A)	재정산금액(B)	A-B
1	36	○○○ ○○○ 산##-7	441	441	447	225,000	225,000	0

2) $A=0.026^2 M \sqrt{F}$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순번	접수 번호	소재지	접수면적	정산면적	결정면적	정산금액 (A)	재정산금액 (B)	A-B
2	35	○○○ ○○○ (산##-1)	1,564	1,564	1,314	267,000	225,000	42,000
		○○○ ○○○ (산##-2)	20	20	20	225,000	225,000	0
		○○○ ○○○(산##)	2,589	2,589	2,409	267,000	267,000	0
		소계	4,173	4,173	3,743	759,000	717,000	42,000
3	34	○○○ ○○○ (산 #-0)	684	684	703	225,000	225,000	0
4	33	○○○ ○○○ (산###-0)	9,274	9,274	8,898	455,000	434,000	21,000
5	23	○○○ ○○○ (산##-8)	428	428	397	225,000	225,000	0
		○○○ ○○○ (산##-9)	445	445	446	225,000	225,000	0
		○○○ ○○○ (산##-10)	1,794	1,794	1,799	267,000	267,000	0
		소계	2,667	2,667	2,642	717,000	717,000	0
6	22	○○○ ○○○ (산##-4)	10	10	10	225,000	225,000	0
		○○○ ○○○(산##-3)	55	55	52	225,000	225,000	0
		○○○ ○○○(산##-4)	176	176	193	225,000	225,000	0
		○○○ ○○○(산##-6)	436	436	478	225,000	225,000	0
		소계	677	677	733	900,000	900,000	0
7	21	○○○ ○○○ (산##-1)	596	596	585	225,000	225,000	0
		○○○ ○○○(산##-3)	522	522	513	225,000	225,000	0
		소계	1,118	1,118	1,098	450,000	450,000	0
8	13	○○○ ○○○ (산##-6)	198	198	199	225,000	225,000	0
		○○○ ○○○(산##-14)	14,623	14,623	15,185	518,000	539,000	-21,000
		소계	14,821	14,821	15,384	743,000	764,000	-21,000
9	14	○○○ ○○○ (산##-0)	595	595	636	225,000	225,000	0
		○○○ ○○○(산##-2)	2,094	2,094	2,220	267,000	267,000	0
		소계	2,689	2,689	2,856	492,000	492,000	0
10	7	○○○ ○○○ (산##-9)	529	529	530	176,000	176,000	0
11	3	○○○ ○○○ (산##-16)	3,319	3,319	3,245	242,000	242,000	0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등록전환 업무 완료 건에 대하여 임야대장상의 면적과 완료면적을 동일하게 전산 정리하였으며, 이로인해 지적측량수수료(3건) 정산을 잘못 처리하는 등 지적측량(등록전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적업무 처리규정」 등 관련 법규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등록전환)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지 급

제 목 계약관련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항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업무 수입인지 미 첨부 현황]

(금액단위 : 원)

계약(접수일)	계약건명	계약자	계약(완료) 금액	수입인지 미 첨부금액	비고
2012. 4.12	○○○○○○○○ 지구계 분할 및 경계	○○○○	93,084,200	70,000	
2012.10.11	○○○○○○ 순환도로 분할측량	○○○○	45,025,200	40,000	
2012.11. 7	○○○○○○ 편입토지 추가분할	○○○○○○○○	13,285,800	20,000	
2012.12.21	○○○○○○아파트 확정	(주)○○○○○○	20,410,500	20,000	
2013. 1. 9	○○○ 하천분할	○○○○	14,099,800	20,000	
계				170,000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2. 4.부터 2013. 1.말까지 계약업무의 종류 및 계약상대방에 따라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데도 5건의 계약업무에 대한 수입인지를 미 첨부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미 첨부된 수입인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맞도록 조치하시고, 계약업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출관련 업무 철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재무규정」 제20조(지출) 제1항에 따라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와 부속서류에 지출의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결의를 받은 후 전표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청구서 및 영수증과 다른 법령에 따라 징구하여야 하는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계사무처리규칙」 제40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해 대금지급 시 지출원인행위 담당은 채권자로부터 청구서를 제출받아 관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출 현황]

(금액단위 : 원)

지출과목	지출내역	지출금액	지출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품의요구일 (계약일)	검수일	인수일	현황
공기구비품	간판교체	5,858,600	'12.12.27	'12.12.20 (청구)	'12.12.27 ('12.12.18)	'12.12.27	'12.12.27	세금계산서 발행일보다 내부품의일이 늦음
수선비	카메라 수선	75,000	'12.2.14	'12.2.11 (청구)	'12.2.14	'12.2.14	'12.2.14	
수선비	랜선 고장수리	66,000	'13.1.21	'13.1.18 (청구)	'13.1.21	'13.1.18	'13.1.18	
소모품비	열쇠복사	38,500	'12.2.24	'12.2.17 (청구)	'12.2.23	'12.2.23	'12.2.23	
광고선전비	홍보용 물품구입	340,000	'12.12.4	'12.12.3 (청구)	'12.12.3	'12.12.5	'12.12.5	지출일보다 검수인수일이 늦음
복리후생비	체육행사 기념품구입	153,000	'12.11.8	'12.11.1 (카드)				품의요구 누락 품명, 수량 등 확인불가
복리후생비	체육행사 단체복구입	248,000	'12.11.8	'12.11.1 (카드)				
복리후생비	체육행사 단체복구입	187,500	'12.11.8	'12.10.31 (카드)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2. 2. 14.부터 2013. 1. 21.까지 지사 간판

교체 외 7건을 집행 하면서, 지출원인행위인 내부품의를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일보다 늦은 일자로 내부품의를 하였고, 검수인수일 이전에 지출한건 이 있었으며, 체육행사 시 물품 및 단체복을 구입하면서 품의요구를 누락 하였고, 구입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이 법인카드 사용전표로만 지출하는 등 지출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재무규정」 및 「회계사무처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관련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회 수

제 목 직원 회의비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회의비의 집행은 기관장 방침에 의해 계획하고 계획된 방침에 의해 타당성 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1월 1인당 10,000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회의비 집행 현황]

(금액단위: 원)

집행일	집행금액			집행목적	참석인원	집행가능액	집행내역	초과집행액	비고
	공급가액	부가세	계						
'12. 3. 12	136,755	13,675	150,430	직원회의	12	120,000	다과 외	52,091	
'12. 8. 9	116,591	11,659	128,250	직원회의	8	80,000	다과 외	36,591	
'12. 12. 14	172,091	17,209	189,300	직원회의	12	120,000	다과 외	16,755	
계	425,437	42,543	467,980		32	320,000		105,437	

그런데도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3회의 직원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비를 집행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당일 회의 참석 인원내 따라 1인당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실제 회의 참석인원보다 과다하게 회의비를 집행하는 등 직원회의비 집행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초과 집행된 회의비 105,437원은 즉시 회수 조치 하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지 조 치 (처 분) 서

【제 목】 계약관련 업무 처리소홀

【내 용】

- 계약 내역

(단위 : 천원)

승낙일자	내 용	금액	계약방법	계약보증금		하자보조금 지급각서	비고
				오	정		
'12.12.21	화장실설치	9,813	수의계약	10%	15%	작성안함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5이상(공사계약) 설정하여야 함에도 100분의 10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 같은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의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시를 대비하여 확약하는 하자보증금 지급각서(하자보증금 100분의 5)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3 . 3 . 29

2013. 03. 28. 부터 2013. 03. 29까지 ○○·○○○○본부 ○○○지사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처분)합니다.

대한지적공사 감사실장(감사반장) ○ ○ ○ (인)